

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·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0. 6. 19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0. 6. 19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79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0. 7. 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)

가. 제안이유

○ 2000년 10월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준공 및 개관에 대비하여 사전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능이 중복된 유사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설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노동복지회관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번지에,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93번지에 둔다.(안 제3조제1항)
-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따로 정하도록 함(안 제3조제2항)
-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납입하도록 함(안 제9조제1항)
-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는 폐지하도록 함(안 부칙 제2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조4항 중 숙박시설이란 용어가 필요합니까? 혹시 노숙자를 위한 것은 아닌지? ○ 3조2항 애칭을 부여하면 부천시 재산을 위탁하면서 위탁자 명의의 건물 명칭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지? <p>예를 들어 부천시 장애인복지관 등 부천시 명칭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?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동부 지침을 준용한 것으로 숙박시설은 없습니다. ○ 행정상 명칭이지 실제 명칭이 없습니다. 실제 명칭은 시민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. <p>노동자, 근로복지 등은 시민이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3조2항 “시장은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”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수정안 요지

○ 별 첨

7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·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번호	관련 제331호
의결년월일	2000. 7. 6 (제79회)

제출년월일 : 2000. 7. 3

제 출 자 : 기획재정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회관 및 복지관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공식명칭만 사용하도록 함

2. 주요골자

○ “시장은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”를 삭제(안 제3조제2항)

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·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·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조제1항을 본문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위치 및 명칭) ①회관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번지에, 복지관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93번지에 둔다.</p> <p>②시장은 행정상의 명칭 외에 애칭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위치 및 명칭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(삭제)</p>

[수정안포함]

부천시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·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부천시노동복지회관(이하 "회관"이라 한다) 및 근로자종합복지관(이하 "복지관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회관 및 복지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지식근로자 양성
2.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·문화·기능교육·탁아 등 생활편의증진
3.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의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직업안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무료직업소개
4.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·오락·숙박
5. 노동조합 또는 노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·회의 등 집회시설의 실비공여
6. 기타 시장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위치 및 명칭) 회관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611번지에, 복지관은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93번지에 둔다.

제4조(위탁운영)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6조규정과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사용허가) ①회관 및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허가를 받은 자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회관 및 복지관의 사용은 부천시의 직장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.

③"특별한 시설설치"라 함은 회관 및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외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사용

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명·음향·무대·기타시설 등 특수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.

제6조(사무실사용)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 노동조합 협의체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요율)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제8조(사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
2.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
3.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9조(사용료) ①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.

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및 복지관과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③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.

④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액(예약액 포함) 중 세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.

⑤관람료 징수를 위한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사용 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사용료를 분할 징수할 수 있다.

제10조(관람료) ①회관 및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관람료는 관람권·예매권(이하 "관람권"이라 한다)을 발매하여 징수하되, 매회별 좌석수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사전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.

③관람권의 매표·수표는 회관 및 복지관에서 전담하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입장료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④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.

제11조(사용료 감면)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 및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2조(보증금) ①회관 및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. 다만 보증금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.

③보증금의 납입은 제9조제1항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수한다.

제13조(허가의 취소)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1.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
2.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3. 천재지변·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
4. 기타 공익상 필요할 때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.

제14조(사용료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1. 제13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2.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되었을 때
3. 신청인이 사용 5일 전에 계약의 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

제15조(사용중단 신고) 회관 및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원상복구) ①회관 및 복지관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은 철거일로부터 5일 내에 인수하여야 한다.

제17조(손해배상) ①사용자가 회관 및 복지관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·기타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제18조(권리의 양도금지)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·인도하거나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9조(입장 및 관람제한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장은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 다만 입장거절이나 퇴장의 경우에는 기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

1. 전염병 질환자
2. 정신이상자 또는 만취자
3.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4. 기타 입장 또는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20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[별표]

회관 및 복지관 사용요금(제9조제1항 관련)

1. 기본시설 사용료

구 분	사 용 요 금		비 고
	근 로 자	일 반 단 체 및 개 인	
강 당 예 식 장 대 회 의 실	20,000원	40,000원	근로자를 위한 공연 및 기타 행사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해당 요금의 50퍼센트로 한다.
소 회 의 실 강 의 실 기 타 시 설	5,000원	10,000원	

비고 1. 복지관은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추가한다.

2. 사용기준은 1회 2시간으로 하며 1시간 초과시마다 25퍼센트를 추가한다.

2. 부대시설 사용료

사 용 구 분		기 준	요 액		비 고
			근 로 자	일 반 단 체 및 개 인	
악 기	피아노(대)	1회	2,500원	5,000원	
음 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마이크 • 녹음기 • 음향기기 	1회	5,000원	10,000원	근로자를 위한 공연 및 기타 행사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해당 요금의 50 퍼센트로 한다.
조 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종합조명 • 일반조명 	1회	전기료 실제 사용액	전기료 실제 사용액	
영 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영사기 • 환동기 	1회	5,000원	10,000원	
전기료			전기료 실제 사용액	전기료 실제 사용액	
냉방료	• 냉 방	시간당	동력, 연료단가 적용 산출	좌 동	연료, 전력단가 변동 경우 현시가 적용
난방료	• 난 방				

비고 : 기타 부대시설 사용시 사용구분에 의거 유사사용품목 요액을 적용한다.